

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02
----------	-----

2025. 10. 14.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9. 30. 강남구청장(세무관리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0. 14.)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기획경제국장 심혁보)

강남구 모범·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

- (1) (현행)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
⇒ (개정)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(2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표현 체계 일괄 정비

나. 우대 및 지원 사항 실질적 확대(안 제5조제1항)

- (1) 다음 우대 및 지원 사항 신설
 - 중소기업 인턴십 인원 우대

- 공연료·의료비 할인

- 문화센터·주민자치센터·평생학습관·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
(2)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기간 확대 : 기존 1년 → 3년

다. 모범납세자등 증명서 발급 근거 조항 신설(안 제5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25. 8. 22. ~ 2025. 9. 11.) 결과, 제5조 일부 내용이 「공직선거법」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해당 조문을 수정하였으며, 부칙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중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북합문화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 사항은 주민자치과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행을 사유로 삭제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음.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: 이주현)

○ 조례 제명

- 조례 제명은 안 제3조에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묶어서 ‘모범납세자등’으로 약칭한 것에 근거하여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.

○ 선정대상

- 안 제3조제2호 나목에서 단체에 적용하는 요건을 법인과 같은 수준(5천만원)에 두지 않고, 개인과 같은 수준(1천만원)에 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임.

○ 우대 및 지원

- 안 제5조제1호가목에서 지급 방편 중 10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,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진작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, ‘경품 등’은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임.
- 안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중소기업 인턴십과 연계할 가점 제도는 우대 방식, 가점 부여 정도 등을 규칙으로 구체화하여 보완하면 좋겠음.
- 안 제5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비용 할인은 각 해당 항목의 성격이나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감경 정도가 정해지는데, 어느 정도 수준의 감경 또는 면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.
- 안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의 경우 조례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고 변동 없지만, 관련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주차요금 면제 범위가 개인 및 단체의 경우 차량 2대까지, 법인은 차량 3대까지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이 사항은 다른 지자체에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보임.

○ 증명서 발급

- 안 제5조제2항에서 모범납세자등에게 증명서 발급 제도를 신설한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의견청취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 그 동안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발급된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대한 사후조치는 명시되지 않았으나, 이 규정의 신설을 근거로 모범납세자 선정 기록 확인, 혜택 향유를 위한 증명서 재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.

○ 조문 정비

- 안 제3조·제4조·제5조·제6조에서 조문 표현 및 체계를 정비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.
- 안 제8조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.

○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확대

- 국세청은 <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제도>에 따라 철도 운임 할인, 의료비 할인, 금융 우대,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,
- 서울특별시는 <모범납세자 지원 제도>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상향, 수수료 면제, 대출금리 인하, 세종문화회관 공연 및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할인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.
- 강남구도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고,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국회예산정책처는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하여 ①모범납세자 선정 후 체납 등으로 선정 취소된 사례가 있을 경우 공정성 검증이 필요하고, ②모범납세자 선발과 혜택에 있어 근로소득자의 비중이 낮고, ③모범납세자 선발 효과가 성실납세 촉진보다 홍보에 치중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음.

○ 향후 과제

- 국세청 및 서울시는 현금화가 가능해 논란 소지가 있는 상품권·경품은 제공하지 않으며, 대신에 혜택의 종류와 정도를 넓히는 한편 납부한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<세금포인트 제도>를 운영하고 있음.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에 비례하여 부여되고, 누적된만큼

세금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음.

- 향후 모범납세자에게도 경품보다는 <세금포인트>를 지급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.

※ 관계 법령

지방자치법 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]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제30조(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)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·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.

지방세기본법 [시행 2025. 1. 1.] [법률 제20629호]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)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.

제18조(신의·성실)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※ 참고 자료

[붙임 1]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모범납세자 조례 제정 현황

(2025. 9. 기준)

순번	지자체 명칭	조례 제명	최근제개정일
1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<u>모범납세자</u>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12.
2	서울특별시 강남구	서울특별시 강남구 <u>모범납세자</u>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 10.
3	서울특별시 강동구	서울특별시 강동구 <u>모범납세자</u>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 8.
4	서울특별시 관악구	서울특별시 관악구 <u>유공납세자</u> 지원에 관한 조례	2024. 11.
5	서울특별시 광진구	서울특별시 광진구 <u>성실납세자</u> 등 우대 및 지원 조례	2017. 9.
6	서울특별시 구로구	서울특별시 구로구 <u>성실·모범납세자</u> 지원 조례	2017. 10.
7	서울특별시 금천구	서울특별시 금천구 <u>유공납세자</u> 지원 조례	2024. 5.
8	서울특별시 노원구	서울특별시 노원구 <u>모범·유공납세자</u> 지원 조례	2017. 07.
9	서울특별시 도봉구	서울특별시 도봉구 <u>모범·유공납세자</u> 지원 조례	2021. 10.
10	서울특별시 동대문구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<u>모범·유공납세자</u> 지원 조례	2018. 12.
11	서울특별시 동작구	서울특별시 동작구 <u>우수납세자</u> 지원 조례	2023. 7.
12	서울특별시 서대문구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<u>모범·유공납세자</u> 지원 조례	2019. 7.
13	서울특별시 서초구	서울특별시 서초구 <u>유공납세자</u>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	2017. 12.
14	서울특별시 송파구	서울특별시 송파구 <u>성실·모범납세자</u> 지원 조례	2025. 7.
15	서울특별시 양천구	서울특별시 양천구 <u>성실납세자</u> 등 선정 및 지원 조례	2021. 10.
16	서울특별시 영등포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<u>모범·유공납세자</u> 지원 조례	2024. 11.
17	서울특별시 용산구	서울특별시 용산구 <u>유공납세자</u> 지원 조례	2023. 9.
18	서울특별시 중구	서울특별시 중구 <u>성실납세자</u> 등 우대 및 지원 조례	2017. 7.
19	서울특별시 중랑구	서울특별시 중랑구 <u>유공납세자</u> 지원 조례	2022. 1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